

19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查報告書

제출년월일 : 1992. 7. 29.

제안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7월 1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2년 7월 24일

다. 상정일자

제1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2. 7. 24) 상정
-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2. 7. 25) 상정
-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2. 7. 27) 상정 및 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永登浦區廳長)

가. 제안이유

- '92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지방자치법 제35조
 -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나. 주요골자

- '92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92 예 산	'92 당 초	'92 추 경
합	계	73,290,625	68,995,537	4,295,088
일	반 회 계	71,483,107	67,311,537	4,171,570
특 별 회 계	계	1,807,518	1,684,000	123,518
	의 료 보 호 기 금	1,352,518	1,229,000	123,518
	새 마을 소득 지원	455,000	455,000	0

○ 주요재원(일반회계)

- 구 세 - 355,000천원
- 세외수입 - 3,806,773천원
- 의존수입 - 9,797천원
- 보조금 : 9,797천원

※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123,518천원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행정재무위원회소관)

(전문위원: 金熙中)

○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315억 2,806만원에 23억 6,254만 9,000원을 계상한 338억 9,060만 9,000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 검 토 의 견

첫째, 방법대원(170명) 인건비가 6억 9,530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기획행정비 중에서 6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본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부재원으로 보조를 받으려 하였으나 부결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바, 방법대원에 대하여 임면과 보수지급을 영등포구청에서 관

장하고, 감독등 일반적 관리는 경찰서에서 관장하는등 동질성 업무가 2원화 되어 업무추진의 효율화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성질상 경찰서로 일원화하여 국비로 지원 하도록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방법대원 추경예산안 산출에 있어서 방법대원이 170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현재 166명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하고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금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구민회관 건립추가분 9억 4,700만원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 관리할 수 있으나, 예산절약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 면에서 직영이나 위탁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2,920만원 (구협의회 연500만원, 동협의회 연 2,4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 추경편성 지침으로 자치구에서 지원토록 하게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3,920만원(구협의회 1,500만원, 동협의회 2,420만원)을 증액계상 하고있으나, 이는 유사단체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에 다소 불균형을 초래 한다고 봅니다.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 金熙中)

○ 추경정 예산안 규모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165억 8,454만 2,000원에 12억 4,1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178억 2,614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첫째, 거택보호자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비로 7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가구당 30원 지원에서 연탄 1장당 30원으로 지원 변경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경노우대 승차권에 85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 고>

- 거택보호자 —— 470세대 614명
- 경노우대 승차권자 —— 18,040명

둘째,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 되었으나 서울시 보조금 감소와

인건비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서울시 보조금이나 특별 교부금지원 비율을 상향토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취로사업비 5억 2,200만원중에서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 등 설치비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수정동의 가결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셋째,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3억 5,851만 2,000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92. 11. 1부터는 쓰레기를 김포 해안 매립지에 반출하는데 따른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 규약 제14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동시에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 俞載漢)

○ 추가영정 예산안 규모

의회소관 일반회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8억 2,959만 8,000원에 1억 6,299만원을 증액 계상한 9억 9,258만 8,000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 점 토 의 건

의회개원 1년이 경과되면서 구민회관의 준공이 금년도에 되어 신청사로 의사당 이전을 하게 됨에 따른 이전비용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기때문에 당초예산 8억 2,959만 8,000원보다 1억 6,299만원이 증가한 9억 9,258만 8,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승인요청하였다고 생각되나 추가경정예산안이 계상되었어도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절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긴축운영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각 상임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동의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제고시키고 특히,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의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이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俞載漢)

○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도시건설소관 일반회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167억 8,957만원에 4억 4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171억 9,400만원 300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 검토 보고

추경에 계상된 도시건설 분야중 건설사업비와 치수하수사업비 및 주택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관리분야에 있어서 정보비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2,3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1992년 3월 시장방침에 의거 노점상 단속, 무허가건물 단속, 야간업소 단속등 단속업무에 관계한 공무원(기능직)에 대하여 특별히 지급토록 조치된 사항으로 당초 예산액에 편성할 수 없었던 예산으로 추경에 승인하므로 직원들의 업무에 충실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사항은 23일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배상금 지불은 부결된 내용입니다.

둘째, 주택사업에 있어서 배상금에 대하여 검토한바 아파트 입주권 사건으로 발생한 추가소요금 1억 6,257만 2,500원으로 이는 1989년 당구청 주택과 주택계장으로 있던 박사원의 사기사건(당시 A.P.T 입주사기) 소송에 따른 배상금의 추가 금액입니다.

이에 따르는 배상은 일차적으로 처분행정청인 구청에서 하되, 감독청인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받아 보상토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지역교통과 분야입니다.

수용비수수료를 검토한 바 산출기초 내용중에 주차단속반 비품수리비 내용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16대 있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2년이 되어서 노후로 고장이 자주 생기므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대당 30,000원 수리비가 예산되므로 $30,000\text{원} \times 16\text{대} \times 6\text{월} = 2,880,000\text{원}$ 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수리비면 카메라 신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품을 구입하여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3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지않고 신품을 구입하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의회운영중 의정활동, 특별판공비 2,900만원중 상임위원회 운영경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재 경제 및 사회 전반이 불경기로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 의회부터 솔선 참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운영경비 2,000만원을 삭감 하였음.
- 기획행정비중 관서당경비 8,043만원중에서 청소 기능직공무원 급식비 1개월분이 더 계상되어 600만원을 삭감하고
- 내무행정비중 수용비수수료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10%인 14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 2천9백3십2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구민회관 관리비 명목으로 수용비 수수료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민회관 건립비 추가분 9억4천7백만원중 물가상승율분에서 10%인 5,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영등포역에 설치계획인 이동민원실 설치비 운영에 따른 보상금및 대수선비 총액 1,036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며 전시효과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동행정 운영에 동사무소 전산인부임 2천7백7십2만원은 현재 각 동사무소의 전산작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음
- 복지사업비중 시설비 5억2천2백만원중에서 3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 돔 설치비로 계상키로 하였음.
- 건설사업비중 수당 576만원중 건축심의 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은 1개월분 96만원을 삭감 하였음.

나. 주요 골자

(단위: 천원)

회 계 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안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A-B)
		세 입		세 출		순 증 감 (B)	
		삭감	증액	삭 감	증 액		
계	4,295,088	-	-	497,663	497,663	-	4,295,088
일반회계	4,171,570	-	-	497,663	497,663	-	4,171,570
특별회계	123,518	-	-	-	-	-	123,518

다. 항목별 수정액 내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참조 (별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6. 소수의견

○ 서홍선, 양운섭 위원

내무행정비중 구민회관 관리비 명목으로 수용비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1,500만원만 계상할 것을 요구함.

○ 이영규 위원

건설사업비중 박사원의 배상금에 대하여 고등법원까지는 피고가 서울시장 및 영등포구청으로 패소하였으나 대법원 상고시에는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단독으로 상고를 제기 패소를 하여 영등포구에서 배상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률상식에 의해서도 납득이 안가므로

앞으로의 재판 계류중의 사건에 대하여는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할 것을 요구함.

※ 별 첨 :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修正案

I 歳入・歳出豫算修正

1. 調整規模 總括

(단위: 천원)

회 계 별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안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A-B)
		세 입		세 출		순 증 감 (B)	
		삭감	증액	삭감	증액		
계	4,295,088	-	-	497,663	497,663	-	4,295,088
일반회계	4,171,570	-	-	497,663	497,663	-	4,171,570
특별회계	123,518	-	-	-	-	-	123,518

2. 會計別 修正内譯

1) 一般會計

가) 歳入 豫算: 원안가결

나) 歳出 豫算

(단위: 천원)

삭	감	증	액	순	증	감
○ 의회운영비 :	20,700	○ 의회운영비 :	5,500		-	
○ 기획행정비 :	6,000	○ 내무행정비 :	69,500		-	
○ 내무행정비 :	120,000	○ 환경녹지비 :	350,000		-	
○ 복지사업비 :	350,000	○ 건설사업비 :	72,663		-	
○ 건설사업비 :	960				-	
계	497,663	계	497,663			

2) 特別 會計: 원안가결

3. 項目別 修正内譯

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안 (추경분)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추경분)	수 정 이 유 및 내 역
관	세항	목		삭 감	증 액		
총 계			-	497,663	497,663	-	'92년 제1회 추경안
의 회 운영비	의 정 활 동	특 별 판 공 비	29,000	20,000		9,000	상임위원회 운영경비 20,000천원 삭감
의 회 운영비	구의회 운 영	자 산 취 득 비	41,884	700		41,184	스텐레스휴지통 구입을 과다계상으로 700천원 삭감
기 획 행정비	기 관 운영비	관 서 당 경 비	80,430	6,000		74,430	청소기능직공무원 급식 비 1개월분 6,000천원 삭감
내 무 행정비	서 무 관 리	수 용 비 수 수 료	14,377	1,400	20,000	32,977	예산 절감을 위해 10% 1,400천원을 삭감하고 구민회관 관리비로 20, 000천원 증액
내 무 행정비	서 무 관 리	민간인에 대 한 위 탁 금	29,323	29,323			전액 삭감하여 수용비 수수료에 20,000천원증 액 계상
내 무 행정비	서 무 관 리	시 설 비	978,062	51,200		926,862	구민회관 전립비 추가분 에서 물가상승율분 10% 51,200천원 삭감
내 무 행정비	민원실 운 영	보 상 금	3,360	3,360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총액 10,360천원 전액 삭감
내 무 행정비	민원실 운 영	대수선비	7,000	7,000			삭감

예 산 과 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안 (추경분)	수 정 액		수 정 예산액 (추경분)	수 정 이 유 및 내 역
관	세항	목		삭 감	증 액		
내 무 행정비	동행정 운 영	일용잡급	41,171	27,720		13,451	각동사무소의 전산작업 이 완료되어 27,720천원 삭감
복 지 사업비	저소득 층보호	사 설 비	522,000	350,000		172,000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 등 설치비 확보로 350, 000천원 삭감
건 설 사업비	건 축 지 도	수 당	5,760	960		4,800	건축심의 위원회 회의 미 개최한 1개월분 960 천원 삭감
의 회 운영비	사무국 운 영	특 별 판 공 비			5,500	5,500	행사및의회운영 의정활 동비로 5,500천원 증액
내 무 행정비	동행정 운 영	사 설 비			24,000	24,000	4개 동사무소 식당 건 축비로 24,000천원 증액 -문래1동 : 5,000천원 -신길1동 : 5,000천원 -양평2동 : 6,000천원 -신길7동 : 8,000천원
내 무 행정비	동행정 운 영	복 리 후 생 비			25,500	25,500	동사무소 식당 인건비 (17개동×300천원×5 월) 25,500천원 증액
환 경 녹지비	쓰레기 처 리	사 설 비			340,000	350,000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 등 설치비로 350,000천원 증액
		사 설 부 대 비			10,000		
건 설 사업비	지 역 개 발	사 설 비	156,498		72,663	229,161	동단위 소규모 지역사업 비로 72,663천원 증액

II. 豫算總則 수정사항 : 없음